

## 4. 宅地所有上限에 관한 法律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4,363號 1994. 8. 19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구축물(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를 “사용검사(임시사용 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구축물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은 이를 제1항의 건축물로 본다.

1. 1990년 3월 2일전에 지방세법 제196 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또는 구축물

2. 1990년 3월 2일전에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7호중 “공업단지관리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로 한다.

3.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산림계·임업 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과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외국인에 한한다)에게 제공되는 사택용 택지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인 사택의 경우에는 1호당 660제곱미터

2. 공동주택인 사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132제곱미터. 다만, 1동의 공동주택이 5세대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당 660제곱미터를 당해 동의 세대수로 나눈 택지면적으로 한다.

제10조 제12호중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

기대여업 · 중기정비업”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 건설기계정비업”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로 한다.

제12조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6호(종전의 제4호)중 “제9조 제2항”을 “제9조 제3항”으로 한다.

3.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성직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택 · 기숙사 · 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건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내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 성직자의 범위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1호당 660제곱미터

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당 132제곱미터. 다만, 1동의 공동주택

이 5세대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당

660제곱미터를 당해 동의 세대수로 나눈 택지면적으로 한다.

4.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교시설물의 부속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 300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당해 건축물의 주차수요에 전용되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2배이내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13조 제5호중 “경매법”을 삭제한다.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중 “준공검사필증”을 “사용검사필증”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제1호 단서중 “시장 · 군수”를 “주소지 관할 시장 · 군수”로 한다.

제19조 단서중 “시장 · 군수”를 “주소지 관할 시장 · 군수”로 한다.

제21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4호(종전의 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3. 제1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3년

제26조 제1항 제7호중 “철도소운송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철도소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고, 동항 제11호중 “조세 감면규제법 제47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로 한다.

제39조 각호외의 부분. 제40조 제1항 내

지 제3항중 “시장·군수”를 각각 “주소지

한다.

관할 시장·군수”로 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 부 칙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이유◇

우리 경제의 국제화 추진과 관련하여 택지소유상한제도를 보완하고 기타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현실과 다소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법 시행일('90.3.2)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중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마찬가지로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대상으로 함(영 제2조 제2항).
- 나. 현재 종업원 사택용 택지취득기준은 내·외국법인의 구별없이 건축 연면적 85제곱미터의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임·직원의 사택용 택지취득기준을 660제곱미터이내로 확대함(령 제9조 제2항).
- 다. 사업자가 종업원의 사택용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조업·운수업 및 금융·보험업 등 10개업종을 제외한 사업자는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영 제11조 제2항).
- 라. 종교법인의 성직자 사택용 택지를 660제곱미터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교시설 부설주차장용 택지를 주차장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2배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종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 제3호 및 제4호).
- 마. 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용으로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후 2년이내에 이용·개발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종교법인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연장함(영 제21조 제3호).

〈법제처 제공〉